서 면 답 변 서

소	속	평 창 군 의 회	질문위원	(심현정) 위원		
답 변	l 자	평 창 군 수	일 자	질의	2021년 12월 2일	
답 번	2 /1	(농업축산과장)	근 기	답변	2021년 12월 7일	
회	의	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(6)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				

<u>질문요지</u>

- 진부면 두일리 산126번지외 1필지 군유지 대부초지
- 2015년 이후 대부계약 변동사항, 최종 대부계약의 법인 변경과 부동산 소유권 변동사항, 목적외 이용시 조치사항

답변내용

- □ 군유지 대부 및 축사 소유권 이동 현황
- 두일리 산 126번지 토지 이동 내역

지번	이동일자	지적(m²)	지목		분할현황		0] F1]] Q
		181,983		이동사유	지번	지적	이동내용
	1973-02-20	181,983	임야	지적복구			
	1997-01-10	176,552	목장	지목변경			
산126	2002-01-07	171,389	목장				산126번지에서 산126-1, 산126-2, 산126-3으로 분할됨.
	66				126-1	4,373	697-1(전)으로 등록전환('02.01.07)
	66				126-2	1,058	693-1(전)으로 등록전환('02.01.07)
	2012-01-11		목장		126-3	5,163	709-1(목장)으로 등록전환('12.01.12)

○ 두일리 군유지 대부지 토지내역

지번	지적(m²)	지목	초지조성 년도	초지면적 (m²)	비고
합계	176,554			176,554	
산 126	171,389	목장	1984	80,389	강릉시 심*섭
① 120			1996	91,000	진부면 손*규
709-1	5,165	목장	1996	5,165	축사 1,980.48㎡

※ 가축사육시설(축사) 부지를 분할하여 709-1번지 부여(2012.05.23.)

○ 2015년도 이후 대부계약 변동사항

대부기간	대부지	대부자	비고
2015.1.1. ~ 2017.12.31.	두일리 산 126 두일리 709-1	진부면 손*규	산림과
2018.1.1. ~ 2022.12.31.		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대관령 (대표 한*)	재산이관 산림과 ⇒농업축산과 산림과-14405(2018.6.28.)호
2020.10.26. ~ 2022.12.31.		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들길따라서목장 (대표 금*희)	농업축산과-27975(2020.10.26.)호 사업법인대표자 및 법인명교체 사유로 대부자 변경

○ 축사 소유권 변동사항

지번	변동일자	소유자 이동 현황	비고	
두일리 709-1	2005. 12. 27.	진부면 손*규 → 축사신축		
	2015. 5. 19.	진부면 손*규 → 원주시 이*훈		
	2015. 5. 19.	원주시 이*훈 → 진부면 손*규	2005. 12. 27. 신축 건축면적:1980.48m ²	
	2016. 1. 19.	진부면 손*규→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대관령 (대표 한*)	(실내마장 1,128.56m ² 말관리실 851.92m ²)	
	2020. 10. 29.	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대관령(대표 한*)→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들길따라서목장 (대표 금*희)		

□ 대부 목적외 사용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

- 2018년 6월 군유재산 관리 이관 : 산림과 → 농업축산과
- 2021. 6. 25 초지 불법 훼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
 - 확인 결과 초지에서의 제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(벌채·벌목)을 하였기에 초지법 제31조(벌칙)에 따라 고발 처리 중(2021. 10. 1.)
 - 두일리 산126번지 초지와 두일리 709-1번지는 대부목적 대로 이용하지 않으므로 대부계약 만료(2022. 12. 31.) 이전에, 재계약 갱신 여부를 검토 할예정

※ 초지에서 축사이용 가능유무
초지법 제2조 초지의 정의 : "초지"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
토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와 목장도로·진입도로·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
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이므로, 초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제힌
행위의 허가신청)에 따라, 초지에서 축사 이용이 가능함.